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16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기존 검사·접종 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 제1호)

나.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운영되거나 사업이 종료되어 지원 근거가 없어진 사항에 대한 정비(안 제3조, 안 별표)

다.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기존 검사·접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기존 검사·접종 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 「지역보건법」 제14조”를 “동법 제25조”로 반영 하였으며,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중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동법 제45조”로 반영 하였으며,
 - 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를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로 개정하였으며,
 - 제2조제2항제3호 “항결핵제 보급” 및 제4조제2항과 제4조제2항제1호~제4호의 결핵사업비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 때문임.
 - 안 제2조제2항제7호 및 안 제3조제3항과 별표 제4호, 별표 제

6호에서 현실에 맞도록 측정수수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골밀도 측정은 검사항목으로 조정하였으며,

- 안 별표 제3호의 가. B형 간염접종, 나. 장티프스, 다. 신증후군 출혈열 유료접종 수수료와 별표 제4호의 가. 간염검사, 다. 암표지자 검사 수수료를 시약단가의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으며, 별표 제3호의 라. 인플루엔자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무료로 접종하고 있어 유료접종부분에서 삭제하였으며,
- 안 별표 제4호의 라. 갑상선기능검사, 마. 원스톱건강검진은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 또한, ‘서울시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종료 되어 조례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보건 서비스 요구에 맞도록 의료수가를 현실화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건행정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역보건법

-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30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17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에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의 내용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2조제3호)

나. 의료지원비 신청에 따른 서식 정비(안 제7조, 안 별표)

다.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 일원화
(안 제7조)

라. 잘못 지급된 의료지원비 환수방법에 있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의 내용과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와 제7조의2(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를, 안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여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비 신청을 일원화하였으며,
 - 제11조제2항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에 있어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위반소지를 없애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구에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18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개정사항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과 중복되는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조문 삭제(안 제3조)
- 나.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 과 일치하도록 정비
(안 제4조)
- 다.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
(안 제8조)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기금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개정사항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규정된 조항이 중복됨에 따라, 안 제3조 기금의조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안 제4조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하여 정비하였으며,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와 일치하도록, 안 제5조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제2항에서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으로 하여 타 기금과 통일되게 표현하였음.
 - 또한 안 제18조(융자금의 대하)를 안 제18조(융자금의 대여)로, 안 제18조제1항 중 ‘대하하여’를 ‘대여하여’로, 안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간 간의 권리·의무 등을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로 변경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 그 밖에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10조제1항, 안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위배 소지를 없애고 법률용어 순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진흥기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 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